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286

제출년월일 : 200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고,
- 「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」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제명 개칭 및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자치단체 사무의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.(안 제4조)
-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검토, 선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(안 제5조)
- 수탁기관을 실의·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.(안 제6조)
-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(안 제7조)
-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. (안 제8조)

-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(안 제10조)
-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(안 제12조)
-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(안 제14조)
-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
 - 『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』를 『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』로 개칭 및 조문 정비

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95조, 제141조

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(시·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사무

②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③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"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7조(협약체결등)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·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-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,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.

③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④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사무처리의 지원)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0조(지휘·감독등) ①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의신청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위임·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증 “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”를 “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권한위임 및 위탁사항)”을 “(권한위임사항)”으로 하고,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·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는 별표6과 같다.

“별표1”의 제명을 “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고, “별표2”的 제명을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고, “별표3”的 제명을 “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고, “별표4”的 제명을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며, “별표6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중 “위임위탁된 사항은 위임위탁 받은 자의”를 “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행정권한의 위임, 위탁에 관하여”를 “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”로 한다.

별표

민 간 위 탁 사 무
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경 제 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•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• 지방기능경기대회종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	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충북 지방사무소	기능장려법 제11조, 제13조, 제15조, 제22조,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
국제통상과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단 과정근무 	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	중소기업 기본법 제14조
기업지원과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 진사무 •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,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,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•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 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제1항,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, 동법시행령 제48조 제3항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지원과	5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• 도 공예품경진대회	충북공예협동 조합 청주상공회의 소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, 동법시행령 제45조
	6	○ 산업단지관리권한에 관한 사항 • 청주지방산업단지 • 현도지방산업단지 • 부용지방산업단지 • 대소산업단지	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
사회복지과	7	○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사항 • 장애인 체육대회 •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• 장애인의 날 기념 재활대회 • 재가장애인상담지도등	(사단법인)한 국장애인재활 협회 충북지부	장애인복지법 제44조, 제20조
	8	○ 장애인 보장구 투료 지원 사업	(사단법인)한 국장애인재활 협회 충북지부	장애인복지법 제23조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보건위생과	9	○나이동진료사업 업무	대한나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	전염병예방법 제23조, 제48조
산림과	10	○수렵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 · 수렵강습회 개최 · 수렵강습이수증교부	(사단법인) 대한수렵협회	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제15조제1항, 제3항, 제27조, 등법시행 규칙 제31조
체육청소년과	11	○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	청소년관련법인	청소년기본법 제61조

〔별표6〕

시장·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

일련번호	단지별	수임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1	충주1지방산업단지	충주시장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
2	만승산업단지	진천군수	"
3	소이산업단지	음성군수	"
4	대동지방산업단지	음성군수	"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 략) 제4조(권한 및 책임의 표시) 이 조례에 의 하여 <u>위임위탁된 사항은 위임위탁받은</u> <u>자의 명의로</u> 시행한다.	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(권한 및 책임의 표시)———— ———— <u>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</u> ————
제5조(생략)	제5조(현행과 같음)
제6조(준용) <u>행정권한의 위임, 위탁에 관</u> <u>하여</u>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중 관계 규 정을 준용한다.	제6조(준용) <u>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
(별표1) <u>권한위임사무</u> -이 하생략 -	(별표1) <u>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</u> <u>하는 사무</u> - 현행과 같음-
(별표2) <u>권한위임사무</u> -이 하생략 -	(별표2) <u>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</u> - 현행과 같음 -
(별표3) <u>권한위임사무</u> -이 하생략 -	(별표3) <u>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</u> - 현행과 같음 -
(별표4) <u>권한위임사무</u> -이 하생략 -	(별표4) <u>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</u> - 현행과 같음 -
(별표5) <u>민간위탁사무</u> -이 하생략 -	(삭제)

현 행			개 정 안
[별표6] 산업단지관리권한 위임 · 위탁기관			
일련 번호	단지별	위임 · 위탁 기 관	근거 및 적용법규
1	청주지방 산업단지	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	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
2	충주1지방 산업단지	충주시장	"
3	현도지방 산업단지	현도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 협의회	"
4	보은지방 산업단지	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"
5	관승산업 단지	진천군수	"
6	대소산업 단지단지	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"
7	소이산업 단지	음성군수	"
8	괴중지방 산업단지	음성군수	"
			(별표6)사장·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
일련 번호	단지별	위임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1		(삭 제)	
2		(현행과 같음)	
3		(삭 제)	
4		(현행과 같음)	
5		(삭 제)	
6		(현행과 같음)	
7		(현행과 같음)	

근 거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第95條 (事務의 委任등)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-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·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-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查·檢査·檢定·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·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·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-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第141條 (事務의 委託등)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所管事務의 일부를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수 있다.(이하생략)